

부산지방법원 2023. 3. 21 선고 2021가단3440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

담당변호사 윤종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함호진, 김태욱

변 론 종 결 2023. 2. 28.

판 결 선 고 2023. 3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7. 2. 체결된 매매계약을 31,835,61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1,835,6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2. 15.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 한다)에게 돈을 대여하고 원고와 C은 당일 'C이 원고에게 2017. 6. 15.까지 230,000,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, 이를 지체하면 연 25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'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

나. 원고와 C은 2017. 8. 18. 위 공정증서상 채무의 미이행 부분과 관련하여 C이 원고에게 2017. 11. 30.까지 60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.

다. 원고와 C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100(본소) 부당이득금, 2020가단317743(반소) 약정금 사건에서 2021. 5. 20. C은 원고에게 20,000,000원(위 60,000,000원 중 미지급 금액)과 이에 대하여 2017. 12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.

라. C과 피고는 2018. 7. 2. C이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매대금 267,000,000원에 매도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C은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8. 7. 26. 접수 제372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31,835,616원(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12. 1.부터 2021. 11. 10.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)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31,835,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.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,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,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),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27847 판결, 대법원 2007. 11. 15.자 2007마887 결정 참조).

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C의 2018년 재무제표상 자산은 4,681,584,484원, 부채는 5,258,680,744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다소 많은 사실은 인정되나, 한편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2018년의 부채가 자산보다 다소 많다는 사정이나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C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김정우

별지